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2024. 2.

# 입 법 정 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 1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2
- 2. 장애인복지법(개정) ..... 4
- 3. 영유아보육법(개정) ..... 6
-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 ..... 7
-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 9
- 6. 주차장법(개정) ..... 11
-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 ..... 12
- 8. 정치자금법(개정) ..... 13

##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14

- 1.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15
- 2.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6
- 3.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 17

##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 18

- 1. 무상교통 지원계획 수립·시행 조례 제정 관련(인천) .... 19
- 2. 건의안 및 결의안 관련 조치계획 조례 규정 관련(서울) ... 22
- 3.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사유 조례 규정 관련(충북 청주) ... 24

## IV. 국외 입법례 ..... 28

- 1.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 29

---

# 1. 법령 제정·개정 동향

---

## □ 개정이유

- 현재 마약류 관련 정책은 주로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의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가 반복되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더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될 경우 확인되기 전까지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마약류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어 현장 업무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양도절차를 간소화하며,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4 신설).
- 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 □ 개정이유

○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한편, 현행법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의2, 제60조의6 신설).
- 나.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함(안 제59조의7).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분조회 등 조치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18 신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 신설).

## □ 개정이유

-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한 수급권과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6항).
- 나.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 □ 개정이유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등이 열악한 탓에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되어 식량안보와 농어촌사회의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고용노동부가 산업과 직종을 총괄하여 고용정책을 주관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 노동의 특성이 도시 지역 및 타 산업 부문과 크게 다르므로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또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지만 인력 수요가 봄, 가을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어가의 일손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2020년)에 따르면,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농가 비율이 경종 농가는 두서류(75.0%), 노지채소(66.0%), 과수(58.3%), 곡류(57.0%), 특용작물(55.1%), 화훼(45.5%)순으로 나타났고, 축산 농가는 산란계·육계(70.2%), 젖소(51.2%), 양돈(46.0%), 한육우(46.0%)순으로 나타남.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를 통한 고용 비율은 작물재배업이 11.4%에 불과하고 축산업은 55.8%로 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계획과 시·군·구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함(안 제5조).
- 바.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교육·체류·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사.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 개정이유

○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므로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교통복지지표 개발 근거를 실시하고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근거를 마련함(안 25조의2 신설).

## □ 개정이유

○ 기계식 주차장치의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95년부터 2019년까지 125건 발생), 설치한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치가 4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SUV 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수용 중량을 초과하는 주차도 늘어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 제19조의12, 제19조의14, 제19조의16, 제19조의17, 제19조의20부터 제19조의24까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한편,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19조제15항 신설).

## □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홍보하여야 함(안 제19조제15항).
-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를 일원화함(안 제19조의6 내지 19조의8).
- 다.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9).
- 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업무를 지정인증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함(안 제19조의12).
- 마.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안전교육을 신설함(안 제19조의14).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함(안 제19조의16).
- 사.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를 강화함(안 제19조의17).
- 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설함(안 제19조의20제4항).
- 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해야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19조의20제7항).
- 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자체점검 의무 등을 도입함(안 제19조의20제8항).
- 카.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안 제19조의22)
- 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외 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의23).
- 파.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 (안 제19조의24).
- 하. 지정인증기관, 전문검사기관,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안 제27조).
- 거.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 너. 배상보험 미가입, 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운행 중지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 7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현재 생존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기증희망등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본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등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 나.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삭제).
- 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제1항).
- 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뇌사추정상태 등을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 마.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 □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2022. 11. 24. 2019헌마528등). 또한, 현행법 제42조제2항에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 이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을 추가함(안 제6조제2호의2 신설).
- 나. 지방의회의원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 다.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

## II. 다른 사·도 조례 입법동향

---

# 1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40호, 2024. 2. 16., 제정]

### □ 제정이유

- 최근 빠른 혁신속도를 가지는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5년 단위)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
- 다. 연구개발, 시험인증, 전문인력양성, 기반조성, 업종전환 등 미래자동차 관련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6조)
- 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민관합동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

###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 □ 시·도별 현황

- 대구, 경북, 충북

## 2

#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충청북도 조례 제5065호, 2024. 2. 16., 제정]

### □ 제정이유

- 충청북도의 영농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 □ 시·도별 현황

-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3

##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2. 15.] [전라남도 조례 제5928호, 2024. 2. 15., 제정]

### □ 제정이유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희귀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희귀질환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도지사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나.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 다.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전문기관, 단체 및 협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 관계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 □ 시·도별 현황

- 대구, 경기, 충남, 전북

---

### III. 지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

##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4. 1. 의견제시 20-0053 참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한 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법제처 2020. 4. 1. 의견제시 20-0053 참조)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과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하 “인천광역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무상교통정책”이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무상교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상교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제1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2호), 무상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제3호) 등의 내용이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조례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비록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무상교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을 반드시 예산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반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원방식, 지급액, 지원절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무상교통정책의 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또는 무상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무상교통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고, 조례로서 무상교통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항목과 규모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조례안은 예산편성에 있어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례안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 이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2조에서 “건의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결의안”이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건의안등”이라 한다)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행기관의 부서가 채택건의안등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 의원 개인으로서의 발의권·질문권·토론권·표결권·원구성선거권 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참조) 채택건의안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행기관의 부서가 채택건의안등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규정할 수 있는지?

## □ 이유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인천광역시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가목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지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 사유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천광역시조례 제5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인천광역시조례 제5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 의 범위나 내용을 알기 어려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중요사항인 감면율에 관한 사항도 전혀 규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 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략)



---

## IV. 국외 입법례

---

#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01호[통권 제239호] [2024. 2. 27.]<sup>1)</sup>

- 경제안보는 외부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전략으로, 특히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형태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일본은 2022년 5월 「일체적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법률」(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한 후에 최근까지 기본 방침 및 지침, 시행령을 정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사회기반 업종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기국회(2024.1.26.~6.23., 150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공급망 3법을 제·개정하였다. 이 중 「공급망기본법」은 2024년 6월 시행 예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기본 방침과 지침에서 경제안보 기본방향과 특정중요물자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령제정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관련법률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주 제 어 : 공급망, 특정중요물자, 특정사회기반, 특정중요기술, 특허출원 비공개

1) 출처 <https://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

## 도입

- 일본은 국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 기술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월 18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공포하였다.<sup>1)</sup>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규정한 점에 특징이 있으며, 총 7장 9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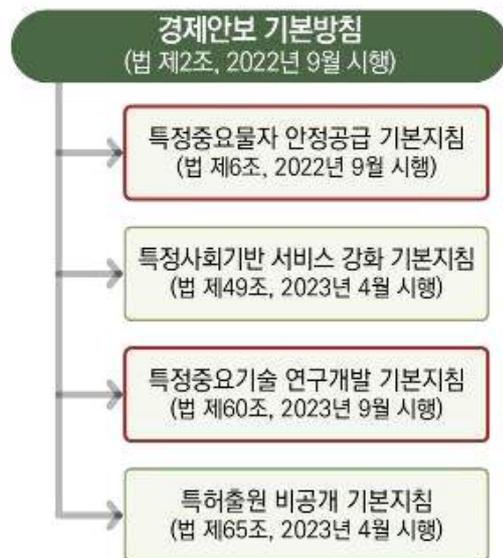
-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제2장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제6조~제48조)
- 제3장 특정사회기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제49조~제59조)
- 제4장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제60조~제64조)
-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제65조~제85조)
- 제6장 기타규칙 (제86조~제91조)
- 제7장 벌칙 (제92조~제99조) 부칙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 이후 경제안보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실시정책으로 4개 경제시책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그림 1]

- 2024년 일본 정기국회에 향만을 포함한 특정 사회기반 업종범위의 확장<sup>2)</sup>과 동법 부대결의에서 정한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3)</sup>

- 참의원·중의원 부대결의(附帶決意)는 법률 제정 시에 추가된 국회 권고사항으로, 참의원과 중의원은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부대결의로 “안전보장을 위한 경제시책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분석에 있어 필요한 기밀보호제도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림 1 경제안보 기본방침과 기본지침



1) 조경희,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2호, 2022.

2) 2023년 7월 일본 주요 화물항구인 나고야항 전산시스템이 해킹공격을 당하여 수일간 정상가동하지 못함.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당시 향만도 특정사회기반 업종에 포함해야 할지 논의하였으나 수직업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음.

3) 日本経済新聞社, “政府提出法案, 経済安保は機密資格が軸に通常国会, 60本編で調整 企業活動に影響大きく”, 2024년 1월 10일.

## 주요내용

###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 및 기본방침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특정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 등 4개 경제시책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과 불가결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안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 경제안전보장 기본방침은 경제적 지원과 규제의 대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경제안전보장의 추진은 국제정세와 사회경제구조의 위협에 대응하여 시장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과 규제의 양면에서 관여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내각부(경제안전보장추진국)에서 정보를 집약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상호조정을 통해 경제시책을 일관성있게 확보해 나가야 한다.

### 2. 경제안전보장 기본지침

#### 가.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기본지침

- 특정중요물자는 국민의 생존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로, 특정중요물자 공급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정중요물자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행령으로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하며, 특정중요물자 소관부처는 관련 대응방침을 수립한다.
  - 민간기업은 기본지침과 대응방침에 기초하여 특정중요물자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특정중요물자 소관부처가 내각총리대신 및 관계행정기관과 사전협의 후에 민간기업의 공급 확보계획을 인정하면 정부 지정기구에서 지원한다.
- '특정중요물자 안정공급 기본지침'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정 국가로부터의 공급 편중, 수출 제한 위험 및 대체가능성의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정한 특정중요물자 지정요건(국민 생존 필수불가결성, 과도한 국외의존성, 공급단절 가능성, 신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은 상기 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11개 물자(항공성물질(의약품), 비료, 영구자석, 공작기계와 산업용로봇, 항공기부품, 반도체소자와 집적회로, 축전지, 클라우드프로그램, 가연성 천연가스, 금속광산물, 선박부품)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 특정중요물자 소관부처는 특정중요물자 확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에게 사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에게도 특정중요물자에 대한 조사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 나. 특정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기본지침

- 일본은 특정사회기반(기반시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업종 기반시설의 중요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14개 업종은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철도, 트럭운송, 외항화물(국내항만과 외국항만 간 운송을 위한 선박 보관화물), 항공, 공항,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사업을 말한다.
  - 특정사업기반 사업자가 중요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는 사전에 소관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특정사업기반 사업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처벌할 수 있다.
- ‘특정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기본지침’은 각 산업실태에 따라 사업규모와 대체가능성을 요건으로 특정사회기반 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 정부의 사전심사에서는 특히, ① 특정사회기반 사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중요설비의 공급자가 외부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② 특정사회기반 설비가 특정방해행위<sup>4)</sup>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를 불식시키는 리스크 관리를 강구하고 있는지, ③ 특정사회기반의 중요설비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④ 일본이나 동맹국 기반시설에 대한 방해행위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특정사회기반 14개 업종과 「사이버보안기본법」상 주요인프라 14개 분야는 규율 대상과 취지에 있어 차이가 있다.
  - 「사이버보안기본법」은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사이버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된 기본법이다. 「사이버보안기본법」의 주요인프라는 중점방호분야를 지정한 것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규율대상이 아닌 항만운송사업과 창고업, 케이블TV, 석유화학공업, 의료진료,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4) 특정방해행위는 특정사회기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로, 예를 들면 특정중요설비 공급자가 악성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설비의 기능을 정지 또는 저하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 다.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

- 일본 정부는 해양, 우주·항공, 바이오, 사이버·종합 영역의 50개 기술을 특정중요기술로 지정하였고, 2023년 11월 현재까지 20건의 기술을 채택했다.<sup>5)</sup>
  - 특정중요기술이란 첨단기술 중 그 연구개발 정보가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또는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자재를 외부에 의존함으로써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은 외부 부당이용의 예시로 ① 관련 기술이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② 기술개발에 이용되는 정보가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③ 관련 기술에서 사용되는 자재나 서비스를 외부 행위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으로 상세히 정하고 있다.
-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실시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에서 특정중요기술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정중요기술의 지원기금과 연구개발의 비전 수립 및 특정중요기술을 공모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첨단기술정보 조사기관인 일본싱크탱크는 산업계와 학계에서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중요기술에 관한 정부 정책을 보조한다.
  - 민간기업 등(다른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포함)은 특정중요기술의 연구성과를 취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조직한다.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특정중요기술에 대해서는 '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기금으로 추진한다.

#### 라.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

- 일본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개한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특허출원 비공개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 특허출원 비공개제도는 군용 및 민간용으로 활용가능한 발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출원 발명의 실시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 특허출원된 서류에 특허출원 비공개 대상 기술이 기재된 경우 특허청은 해당 서류를 제1차 심사한 후 내각부에 송부한다. 내각부는 특허출원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전조치할지 여부에 대해 제2차 심사한다.
  - 보전조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보전조치를 하게 되면 출원취하 제한, 발명실시 제한, 발명내용 공개금지, 발명공유 제한 및 외국출원 금지 효과가 발생한다.

5) 内閣官房, “経済安全保障重要技術育成プログラムの現状”, 2023.

2023년 11월 현재까지 해양 3건, 우주·항공 11건, 바이오, 사이버·종합 6건이 채택됨. 구체적으로 해양관련기술, 수송기술, 양자정보과학/첨단 엔지니어링·제조기술, 로켓공학, 첨단감시·측위센서기술, 뇌권퓨터·인터페이스기술, 에너지축적기술, 클라우드기술, 사이버보안기술, 우주관련기술, 극초음속, 화학·생물·발사성물질·핵, 첨단재료과학/바이오기술, 의료·공중위생기술, 인공지능·기계학습기술, 첨단컴퓨팅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반도체기술, 데이터과학·분석·축적·운용기술임.

- '특허출원 비공개 기본지침'은 국가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비공개 대상 기술로 정하고 있다.
  - 2024년 5월 시행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 제12조는 대량살상무기 전용기술(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핵심중요기술(AI, 양자기술, 극초음속, 무인기기술) 및 신영역기술(우주, 사이버)의 25개 특정기술<sup>6)</sup>을 비공개 대상 기술로 정하고 있다.
  - 특허출원자는 국내외에서 특허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실과 특허권에 기초한 제3자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 3.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 신설 움직임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2023년 2월 내각관방은 '경제안보 기밀보호(Security Clearance)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24년 1월 '기밀보호제도에 관한 최종보고서'<sup>7)</sup>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는 국가정보 보전조치로, 안전보장상 중요한 정보로 지정된 정보(Classified Information)에 접근하는 사람을 조사하여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 접근권을 부여하고, 만일 특정한 자가 국가정보 보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제도이다.
  -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는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정보 관리 및 제공 규칙의 정비, 기술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과 2024년 신설되는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는 모두 기밀에 대한 조치이나, 규율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 「특정비밀보호법」은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보, 외교, 방위, 테러대책의 4개 분야 정보를 공무원이나 일부 민간기업 종사원이 유출하거나 부정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동법에서는 특정비밀을 기밀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다.
  - 이에 비해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는 <표 1>과 같이 상기 4개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대응, 심사분석, 공급망분석, 국제 공동연구개발 정보까지 포함해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경제안보 기술정보를 기밀취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기밀 정도(Top Secret, Secret, Confidential)에 따라 다층적 기밀 분류체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6)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 제12조 (1) 항공기 위장은폐기술, (2) 무기관련 무인항공기·자율제어 등 기술, (3) 유도무기기술, (4) 발사체·비상체 탄도기술, (5) 전자기서 런치미용 무기기술, (6) 레이저병기등의 새로운 공격방어기술, (7) 항공기·유도미사일 방어기술, (8) 잠수선 공격·방호장치 기술, (9) 음파이용 위치추적 무기기술, (10) 스크린 제트엔진기술, (11) 고체연료 로켓엔진기술, (12) 잠수선기술, (13) 무인 수중항주체기술, (14) 음파이용 위치추적 잠수선기술, (15) 우주항행체 열보호 등 기술, (16) 우주항행체 관측·추적기술, (17) 인자점·초격자구조 반도체 수광장치기술, (18) 텀퍼강방식 계산기부품 보호기술, (19) 통신방해기술, (20) 우라늄·플루토늄 동위원소 분리기술, (21) 사용후핵연료 분해·재처리기술, (22) 중수기술, (23) 핵폭발장치기술, (24) 가스탄용 조성물기술, (25) 가스·분말 살포탄약기술.

7) 内閣官房, "経済安全保障分野におけるセキュリティ・クリアランス制度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最終とりまとめ", 2024.

**표 1** 특정비밀보호법과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

	특정비밀보호법	경제안보 기밀보호제도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
정보	• 안보, 외교, 방위, 테러대책	• 안보, 외교, 방위, 테러대책 외에 우주·사이버 등 기술 정보
비밀	• 단층적 구조(특정비밀)	• 기밀 정도에 따른 다층적(3단계) 구조
대상	•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원	• 개인: 공무원, 민간기업 종사원 • 시설: 기밀정보 공유 민간사업
사생활 보호	• 본인 동의 필요	• 본인 동의 필요
벌칙	• 최고 징역 10년	• 기밀 정보유출: 최고 징역 10년 • 기타 정보유출: 최고 5년 구금

출처) 内閣官房, “経済安全保障分野におけるセキュリティ・クリアランス制度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最終とりまとめ”, 2024. 조경희,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0호, 2014.

### 시사점

-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특정중요물자 지정, 특정사회기반 사업자 지정,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 가동, 특허출원 비공개 대상 기술 선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특정중요물자와 우리나라 「공급망기본법」상 경제안보품목은 모두 시행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일본 특정중요물자는 지정 과정에서 지정 요지만 공개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정 분석내용은 기밀사항으로 취급되고 있어 행정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sup>8)</sup>
  -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하반기 경제안보품목별 소관부처가 공급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물자 및 원재료 중에서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누구도 마스크를 필수물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급 위기마다 경제안보품목이 추가되면 수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안보품목 지정에 있어 민관 상호 간의 의견교환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8) 柿沼 重志, “経済安全保障推進法による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靱化-半導体, 蓄電池等を特定重要物資に指定”, 参議院 経済のプリズム 221号, 2023, p. 9-12.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제정 필요 조례안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 249-5708